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11,752호

제 1 조 (목 적) 이 영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법 제 5 조제 1 항에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올림픽복권 발행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에 교부되는 금액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5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 2 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 3 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지원조건) 법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급할 택지중에서 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별로 정하여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의 공급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외의 택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

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 5 조 (토지의 환매절차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 토지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후 6 월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① 법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5 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5 년을 초과하여 분양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 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대조건외의 신고대상) 법 제 1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32 조제 1 항에 규정된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 8 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급 또는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 12. 31, 법률 제 3,783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중 정부의 출연금, 올림픽복권자금 중 일부 및 채권입찰제의 실시로 조성되는 제 2종 국민주택채권자금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되는 자금의 이차 유통과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 2조 및 제 3조).

나.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토지개발공사별로 그 해에 공급할 택지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정하여 해마다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고된 택지의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도록 함(영 제 4조제 1항 및 제 2항).

다.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관철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건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함(영 제 6조).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인 20호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자대보증금·임대기간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조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함(영 제 7조 및 제 8조).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보건사회부령제771호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2조 (공중목욕장의 종류)영 제 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목욕장

- 가. 공동탕
- 나. 가족탕
- 다. 한증막

2. 특수목욕장

- 가. 사우나탕
- 나. 터키탕

다.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욕실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일반수영장

4. 특수수영장(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으로서 수영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 4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등급은 별표 2의 공중목욕장의 등급기준에 따라 갑등급과 을등급으로 구분한다.

제 11조제 1호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차목 내지 거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차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연 1회이상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업소내에 비치할 것. 다만, 원수를 수도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자. 발한실(증기실 또는 건열실을 말한다)의 상부온도는 그 구조가 습식일 경우에는 섭씨 60도 내외로, 그 구조가 건식일 경우에는 섭씨 80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발한실의 안과 밖의 벽면에 온도계 및 발한방법, 이용시 주의사항등에 관한 게시문을 붙여놓을 것

너. 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제 11조제 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증막에서 한증을 위한 포대를 사용할 경우 포대는 완전히 쪼스독하고, 씻어서 건조시킨 다음 사용하도록 할 것

사. 안마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 11조제 3호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하고, 동호의 마목 및 바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되, 나목(종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나. 사우나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서의 입욕객을 위한 안마

(맛사지 및 지압을 포함한다)는 공동탈의실을 겸한 휴식실에서 또는 개별 밀실로 구획되지 아니한 안마실에서 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안마사는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 영업소안에서 음란·퇴폐·도박행위를 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우나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서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 11조제 4호의 제목중 “수영장”을 “일반수영장 및 특수수영장”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의료인 1인이상”을 의료인 및 수영 안전지도원 각 1인이상”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5)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세균검사는 욕수를 동시에 여러장소에서 10병이상 채취하여 1밀리리터당 200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것이 전 검사의 15퍼센트 이하일 것

자.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검사하게 할 것

차. 비색기·청명도판등 간단한 수질검사기구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체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제 13조중 “별표 2의 기준”을 “별표 3

의 검사지도중점사항 및 채점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 항의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 6 호서식의 검사지도 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당해 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 제목 “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처분의 기준등”으로 하고, 본문중 “별표 3 과”를 “별표 4 와”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 및 기간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 조 (행정처분대장) 도지사는 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전의 별표 2) 검사지도 중점사항 및 채점기준중 “1. 일반목욕장(공동탕 및 가족탕)”을 “1. 일반목욕장(공동탕·가족탕 및 한증탕)”으로하고, “2. 특수목욕장(한증탕 및 터키탕)”을 “2. 특수목욕장(사우나탕·터키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으로 하며, “3. 수영장”을 “3. 일반수영장 및 특수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4] (중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4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6 호서식] 및 [별지 제 7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증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증탕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형태에 따라 이 규칙 별표 1 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한증탕 또는 사우나탕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안마실이 있는 경우 안마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중 4.

사우나탕의 다.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개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욕실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특수수영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수영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특수수영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관한 행정처분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전의 양도인이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별표 1] 공중목욕장의 시설기준(제 3 조)

1. 공동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현관 탈의실의 출입구, 탈의실 및 욕실은 각각 남녀별로 구별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욕실은 목욕장 밖으로부터 투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욕 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여 그 표면은 도자기, 돌, 인조석 또는 몰탈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4) 벽과 천정은 열기 및 습기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나무·알미늄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된 적정수의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오수의 배출구를 설치하여 욕실안에서 사용한 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수조는 욕외에 설치하되, 내수재를 사용하여 악취의 발생, 오수의

	침수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수세식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바닥면적 5제곱미터당 냉·온 수도전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냉·온 수도전으로 된 샤워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한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고 하고, 출입문을 높이 1.6미터 이상 폭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욕 조	(1)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2.0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깊이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는 콘크리트로 하되, 타일등 내수용자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단의 적당한 곳에 냉·온 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탈 의 실	(1) 바닥면적은 욕실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시 설 기 준
	(2) 바닥은 나무, 리노륨등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양탄자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입욕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5) 탈의실 안에 입욕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욕자의 탈의 및 착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입욕자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입욕자를 위한 음료수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변 소	(1) 바닥면적은 1.4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탈의실과 연결하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현 관	(1) 바닥면적은 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입욕자의 신발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적당수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기 타 부대시설	(1) 기관실, 보일러실 및 연료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재·연소진 처리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그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폐수열 회수장치등 적절한 에너지절약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조수를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족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가족탕은 개실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욕실과 탈의실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투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욕 실	(1) 냉·온 수도전, 샤워시설 및 세면기를 설치하고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2)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6)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욕 조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상단에는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온 수도전을 설치하며,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안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탈 의 실	1. 공동탕의 라의 (1) 내지 (4)의 기준에 의한다.
마. 변 소	수세식으로 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한 증 막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공동탕의 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한 증 막	(1) 바닥면적은 16.5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한증막은 내화벽돌 또는 기타 내화성재료로 반원추형으로 축조하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증막의 출입문은 높이 1미터 폭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내부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하고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냉수 및 온조욕조는 각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냉·온수도전을 3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샤워시설을 3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1. 공동탕 나의 (2) 내지 (6)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탈의실 및 휴식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세식변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3) 1. 공동탕 라의 (2) 내지 (7)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수의 포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포대는 자연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마. 기타시설	1. 공동탕의 사의 (1) 내지 (2)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사우나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위치 및 구조	1. 공동탕의 가의 기준에 의하되, 숙박업법에 의하여 허가받는 호텔(관광호텔을 제외한다)·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나. 욕 실	(1)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 (2) 냉·온 수도전 6개이상, 냉·온 수도전으로 된 샤워시설 6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8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의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를 설치하고 욕조상단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냉수욕조에는 냉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7)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탈의실·휴식실 및	(1) 탈의실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휴식실은 따로 설치할 경우 50제곱미터이상의

구 분	시 설 기 준
안마실	<p>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여야 하며, 개별 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p> <p>(2) 안마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밀실로 구획에서는 아니된다.</p> <p>(3) 바닥은 나무, 리노륨등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4) 입욕자의 휴식에 필요한 기온, 짧은 속바지를 비치하여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1. 공동탕의 라의 (3)내지 (7)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p>
라. 변소·현관 기타 부대시설 등	<p>변소는 1. 공동탕의 마의, 현관은 1. 공동탕의 바의, 기타 부대시설은 1. 공동탕의 사의 기준에 의한다.</p>

5. 터 키 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p>(1) 관광사업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소에 설치하되, 개실로 구획하여야 한다.</p> <p>(2) 바닥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나. 욕 실	<p>(1) 욕조·옷장·세면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6) 및 2. 가족탕의 다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3) 입욕자의 발열을 촉진하는 한증함을 설치하되, 그 내부는 입욕자가 증기배출구와 직접 접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4) 공동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 사우나탕의 나의 (4)의 기준에 의한다.</p> <p>(5)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미터이상 폭 0.7미터이상으로 하고, 높이 1.2미터로부터의 상부에는 0.3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를 끼워야 한다.</p> <p>(6) 입욕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시설을 하여야 한다.</p> <p>(7) 조명은 20룩스이상으로 하고, 조명용 전등은 1개의 스위치로 전부를 점멸할 수 있어야 한다.</p>
다. 변 소	<p>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층에 남·여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라. 대기실등	<p>(1) 대기실은 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입욕자가 대기하는데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의자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2) 신발장은 현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마. 기 타 부대시설	<p>기관실, 보일러실, 연료저장장 및 재·연소진 처리장은 1. 공동탕의 바의 기준에 의한다.</p>

6.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공동탕의 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욕 실	1. 공동탕의 나.의 기준에 의한다.
다. 욕 조	1. 공동탕의 다.의 기준에 의한다.
라. 탈 의 실	1. 공동탕의 라.의 기준에 의한다.
마. 변소 및 현 관	1. 공동탕의 마. 및 바.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본래의 주된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변소 및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기 타 부대시설	1. 공동탕의 사.의 기준에 의한다.

7. 일반수영장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수 영 조	<p>(1)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2) 물의 깊이는 0.9미터 내지 2.7미터로 하고, 수영조의 벽측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또는 경기용 수영장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3)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p> <p>(4) 바닥과 벽면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바닥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의 경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심이 1.7미터 이상이 되는 곳은 더 급한 경사로 할 수 있으나 함정을 이루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수영조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되, 배수구에는 일정한 크기의 고형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장치를 하여야 한다.</p> <p>(6) 수면에 뜨는 찌꺼기의 제거 및 일정한 수면유지를 위하여 수영조의 벽면에 배수하는 물받이기 장치 4.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장치를 넘어 배수되는 물은 순환용 펌프로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p> <p>(7) 물의 유입구 관과 유출구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8) 주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헨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9) 도약대가 있는 수영장에 있어서는 도약대의 돌출부의 최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범위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0) 도약대는 주름잡이, 고무판등을 덮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1) 실내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과 도약대 사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구 분	시 설 기 준
나. 탈의실·세정장및변소	(1) 수영자가 수영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탈의실 변소, 세정장을 순서로 거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세정장은 남·여별로 구분하여 외부로부터 투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3) 탈의실에는 수영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정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냉·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수도전을 각각 수영자 50인당 1개이상 설치하고 상당수의 물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에만 개장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온수 샤워시설 및 수도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변소는 남·여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는 수영자 60인당 1개이상, 대변기는 소변기 5개당 1개이상으로 하고, 여자용 변기는 수영자 40인당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변소의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충분한 환기 시설과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실내수영장 또는 야간수영을 하는 수영장의 수면 기타 주요장소에는 100룩스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기타시설	(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감시탑을 설치하여 수상 안전요원 3인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특수수영장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수 영 조	7. 일반수영장의 가. (2) 내지 (1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영조의 깊이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적절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나. 탈의실·세정장및화장실	7. 일반수영장의 나. 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본 영업을 위하여 탈의실, 세정장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타시설	7. 일반수영장의 다. 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공중목욕장의 등급기준 (제 4 조)

업 종	등 급	시 설
공 동 탕	갑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이상 발한실 6.6제곱미터이상 냉수욕조 1개이상 고온수욕조 1개이상
	을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미만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터키탕, 헬스클럽의 부대 시설인 목욕탕	갑등급	
	을등급	
일 반 수 영 장	갑등급	수영조 3개이상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이상
	을등급	수영조 3개미만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미만
특 수 수 영 장	갑등급	
	을등급	

(이하 별표 생략)

한번두번 어긴약속 두고두고 불신산다